

의안번호	제2023-15호
상 정 년 월 일	2023. 11. 15. (통계데이터분과위원회)

**통계등록부 서비스 확대 및
통계법 개정 후속 국정위 심의 사항 보고**

제 출 자	통 계 청 장
제출년월일	2023. 11. 15.

||| 목 차 |||

I.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서비스 추진	1
1. 통계등록부 구축·운영 현황	1
2.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서비스 추진 개요	2
3. 주요 추진 내용	3
4.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	5
II. 개정통계법에 따른 통계등록부 심의 사항	6
1. 통계법 개정 현황	6
2. 통계등록부 심의 관련 검토 사항	7
3.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	8
【참고1】 통계등록부 체계 및 구축 현황	9
【참고2】 통계데이터센터(SDC) 및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(RDC) 현황	11
【참고3】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체계	12

1. 통계등록부 구축·운영 현황

- 통계청은 행정자료 기반의 모집단 활용을 위해 '16년부터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였고, '18년 통계데이터센터(SDC) 개소 이후 대외 서비스 실시
- 기본 통계등록부 4종, 정책맞춤형 통계등록부 3종 구축·운영('23.10월말 현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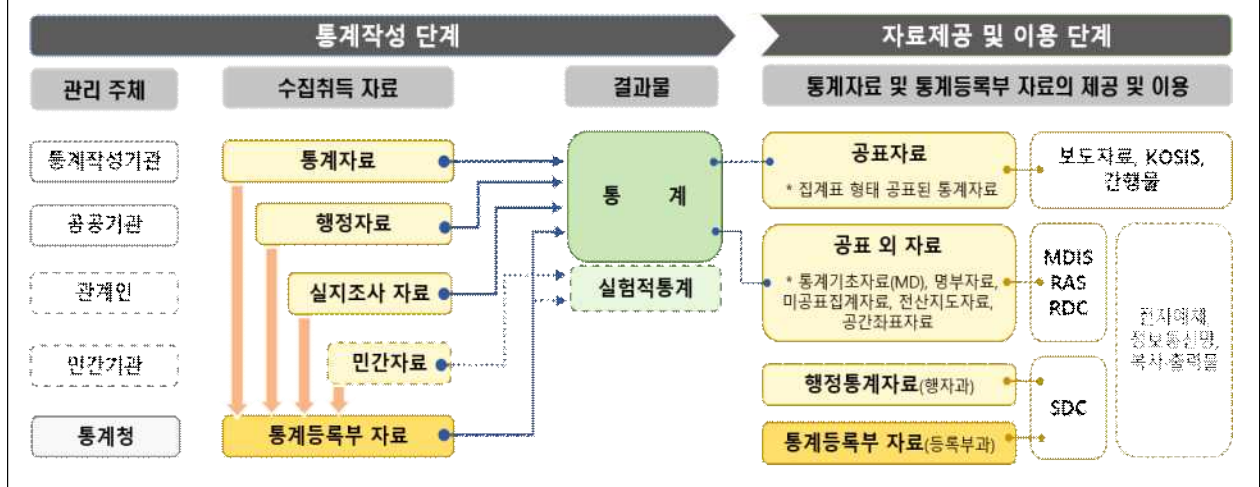
【 통계등록부 체계 및 종류 】

- ❖ (기본 통계등록부) 인구통계등록부, 가구통계등록부, 주택통계등록부 3종과 기업통계등록부 1종을 각각 인구, 사업체에 대한 대표 모집단으로 보류
- ❖ (정책맞춤형 통계등록부) 인구·가구·주택통계등록부에서 파생된 아동가구통계등록부, 청년통계등록부,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 3종을 추가 구축



- 통계등록부는 통계자료, 행정자료, 실지조사자료 및 민간자료를 원천으로 구축되며, 통계작성, 데이터 간 연계에서 중요 역할 수행

【 통계등록부 원천자료 제공·이용 】



- 통계등록부는 통계청 고유업무로서 연계키를 보유한 모집단 자료이므로 일반 통계자료보다 엄격하게 구축·관리·이용

【 통계등록부, 통계자료 간 차별성 】

구 분		통계등록부	통계자료
구축	자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既구축된 통계·행정자료를 자료원으로 활용 * 자료의 보완·현행화 제한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대상자(처) 조사, 행정 보고체계를 통한 자료 취득 * 대상자(처)에 문의, 자료의 확인, 보완·현행화 가능
	포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모집단 기본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전수 및 표본
	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연계키(통계목적 고유번호) 有 * 통계등록부, 행정자료 연계 시 이용 * 타자료 연계 시 가교역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연계키 無 * 타자료와 연계를 위해서는 특성정보를 이용한 연계키 생성 필요
관리	소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통계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통계작성기관(통계청 포함)
	관리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통계등록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실사과, 마이크로데이터과
	통계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가공통계 생산 지원 * 항목대체, 표본명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조사·보고·가공통계 직접 생산
제공·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SDC에서 자료 이용 * 모집단, 연계키 보유, 개인식별 방지를 위해 망분리 상태 분석, 결과표만 반출 * 협의를 통해 전자매체, 정보통신망, 복사·출력물 가능(극히 제한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MDIS(다운로드), RAS, RDC 및 SDC * 자료의 세분화, 민감도에 따라 차등화 하여 자료 제공 * 협의를 통해 전자매체, 정보통신망, 복사·출력물 가능 	

2.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서비스 추진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(현황) 데이터 3법 개정,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,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, 多출처 데이터 융합·활용의 핵심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이용 편의 제고, 활용 확산 중요성 강조
- (문제점) ① 필요할때마다 인구부문 통계등록부를 연계·결합하는 이용자 측면의 노력 등 비효율성 내재, ② 이용자의 데이터 가공·연계 역량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분석의 효율성·정확성 차등 발생 우려

➔ 인구부문 통계등록부의 편리한 이용, 분석의 일관성 제고 등 통계등록부 서비스 환경 개선 필요

□ 추진 경과

- 수요 파악('22년 이용자 만족도조사) : '22.11월
 - * 데이터 연계 및 통합 필요성, 편집의 어려움 등 이용자 의견 수렴
- 기본계획 수립 : '23.3월
- 인구부문 통계등록부 3종 통합 및 내검 : '23.6월
- 취업활동통계등록부, 주택소유통계MD 입수·연계 및 내검 : '23.8월
- 레이아웃 작성 및 집계표 검토 : '23.10월
-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의견 수렴 : '23.10월

3. 주요 추진 내용

① 인구부문 통계등록부 3종 통합

- 인구통계등록부의 데이터 간 연계 가교역할 확산 및 전수자료 분석 기반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인구부문 통계등록부 3종 우선 통합
 - 인구부문 통계등록부의 7개년 시계열(2015~2021)에 대해 인구기준으로 가구 및 주택을 연계 처리하고 동시에 서비스
 - 동일한 개인에 대해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시계열 연계·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
 - 인구-가구-주택자료 연계 시, 상호 결측값 등을 감안하여 특별조사구* 및 빈집을 제외처리하여, 인구통계등록부 대비 65만건(1.25%) 불포함
- * 해외주재공관, 교도소, 소년원, 군부대 등

【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서비스 DB 구성도 】



② 분석자료 추가 연계

- 전수자료로 활용가능한 타 통계등록부, 행정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등 분석항목을 추가 연계하여 활용도 제고

* 인구부분 통계등록부(인구·가구·주택)+취업활동통계등록부+주택소유통계MD

【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서비스 DB 항목 】

인구통계등록부	가구통계등록부	주택통계등록부	취업활동 통계등록부	주택소유
✓ 행정구역	✓ 가구유형	✓ 주택형태	✓ 종사상지위	✓ 주택소유 여부
✓ 성별	✓ 가구구분	✓ 주거용 연면적	✓ 근속기간	
✓ 만연령 등	✓ 세대유형 등	✓ 건축연도 등	✓ 기업체 규모 등	

③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의견수렴 및 조치

- (개인식별 가능성 축소) 인구 모집단 항목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분석편의를 제고하고, 분석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을 확보한 반면에, 개인식별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
 - 초기 서비스인 점을 감안, 기존 통계등록부에는 제공되는 연계키 (통계목적고유번호)를 제거하여 이용자가 임의로 개인 항목을 추가 연계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개인식별 등 우려에 대응
 - 데이터 보안 방식 최신화 등을 고려하여 연계키 제공은 향후 재검토 필요
- (데이터 리터러시)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DB를 정확하게 이해·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메타데이터, 구축 프로세스, 기존 인구통계등록부와의 차별점 등을 수록한 이용자 설명서 작성·활용할 예정
- (개선점) 서비스 시기, 항목 확대 등 통합분석 서비스 강화 의견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
 - 인구부분 통계등록부 및 타 통계등록부 서비스 시기를 감안하여 통합분석 서비스 업데이트 시기를 앞당길 필요
 - 위치정보, 주택소유지분, 연금통계MD 등 추가가능 항목을 검토, 협력 등 노력 필요

4.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

□ 기대 효과

- 既결합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, 동일한 결합 결과를 이용자가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
- 인구부문 통계등록부 간의 결합 비효율성을 제거하고, 분석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제고

□ 향후 추진 일정

- 국가통계위원회 데이터분과위 보고, 의견 수렴 : '23.11.15.
 -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상정 : '23.11월
 - 이용자 안내서 작성 : '23.11월
 - 구축결과 보고 및 서비스(통계데이터센터) : '23.12월
 -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 서비스 확대(안) 마련 : '24.1사분기
- * 추가 항목 검토·확보, 서비스 편익 제고 등

II

개정통계법에 따른 통계등록부 심의 사항

1. 통계법 개정 현황

- 그간 통계등록부는 통계기초자료 또는 행정통계자료*로 간주하여 구축·운영해 왔으나, '23.7월 통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 확보
 - * 「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(통계청예규)」¹⁾
- 통계등록부의 정의^{제3조}, 구축 및 운영^{제5조의3},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^{제29조의3}·이용^{제31조} 규정이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반 마련
- 특별히, 법 제5조의3(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)은 통계등록부의 종류, 종류별 구축항목, 구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
 - 이에, 통계법 시행령 개정(안)에서는 현행 통계등록부 7종과 구축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,
 - 그 밖의 (신규)통계등록부와 더불어 통계등록부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

【 통계법 시행령에 명시된 통계등록부 국통위 심의사항 】

- ❖ 법 시행령 제2조의2(통계등록부의 종류 등)
 - ① 제8호 : 제1호에서 7호 외에 **심의를 거쳐 구축·운영하는 통계등록부**(이하 (신규)통계등록부)
 - ④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·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**매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**를 받아야 한다.
 - 1. 통계등록부의 종류와 구축항목
 - 2.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해 제공받은 행정자료 현황
 - 3.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현황(법 제29조의3)
 - 4. 통계등록부 자료의 이용 현황(법 제31조)

➔ 개정통계법에 명시된 통계등록부 구축·운영에 관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사항을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, 일관성·체계성을 갖춘 향후 보고체계 마련 필요

1) 통계기초자료 : 개인 가구,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,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
행정통계자료 :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, 정제,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

2. 통계등록부 심의 관련 검토 사항

① 심의 체계 및 방안

- 통계법 시행령(초안)에 의거 각호를 국통위 심의(본회의)를 거칠 경우, 행정적 소모가 크고, 전문적인 논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큼
- 현재 구축·서비스되는 통계등록부 7종의 경우, 항목 및 이용하는 행정자료의 변동이 크지 않고, 통계등록부 자료의 이용·제공 현황도 연간 실적치에 해당하여 본회의 의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
-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·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는 점에서도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를 통해 보고·논의하고, 보완·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의 실효성이 큼

② 심의(보고) 주기 및 시기

- 통계등록부의 경우, 통계법 시행령(안) 제2조의2 제④항에 매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
- 심의(보고) 주기는 1년(정기심의/보고)으로 정하고, 그 시기는 통계등록부의 연간 이용실적이 집계되는 익년 2~3월이 적합
- 다만, (신규)통계등록부 구축 시에는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여 세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

③ 심의(보고) 서식

- 통계법 시행령(안) 제2조의2 제①항 제8호에 따른 (신규)통계등록부의 경우는 별도 서식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상정하되 명칭, 구축 항목, 제공받은 행정자료, 구축 방법, 제공·이용 방법 등을 포함토록 하고,
- 통계법 시행령(안) 제2조의2 제④항 각호에 따른 일반적인 심의(보고) 사항은 일관성·비교성 확보를 위해 아래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

【 보고 서식(안) 】

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, 원천 행정자료(20**.12.31.현재)

연번	통계등록부 종류	구 축 항 목	원천 행정자료	비 고
1	인구통계등록부	○(○○개) 구축항목 리스트	○(기관) 자료명	구축시기, 시계열 등
:	:	:	:	
7	청년통계등록부	○(○○개) 구축항목 리스트	○(기관) 자료명	

※ 통계데이터센터(SDC)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되는 통계등록부 및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

②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및 이용 현황(20**.1.1. ~ 20**.12.31., 건수)

연번	구 분	총 건수	제 공(승인통계작성)			이 용			
			① 명부/표본	②항목대체	③검증	④ 연구	⑤ 교육	⑥ 기타	비 고
1	인구통계등록부								
:	:	:	:	:	:	:	:	:	:
7	청년통계등록부								
:	:	:	:	:	:	:	:	:	:

※ 가. 통계데이터센터(SDC)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, 행정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대내 서비스를 모두 합한 실적임
나. 개인/단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시계열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는 합산하여 1건으로 처리

3.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

□ 기대 효과

- 통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통계등록부에 대한 국통위 심의(보고) 사항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일관성·체계성 확보

□ 향후 추진일정

- '23년 기준 통계등록부 구축, 운영 심의(보고) : '24.2~3월

□ 통계등록부 구축 · 관리 체계

- 인구, 사업체 부문 통계등록부를 기본 통계등록부로, 이외 부가적으로 확충·파생된 정책맞춤형 통계등록부 등 이원화하여 구축·관리
- (기본 통계등록부) 인구부문 인구·가구·주택통계등록부 3종과 사업체 부문 기업통계등록부 1종, 총 4종을 기본 통계등록부로 분류
- (정책맞춤형 통계등록부) 정책대상에 따라 다양한 행정자료를 추가 연계하여, 정책맞춤형 통계등록부*로 구축·관리
- * 취업활동통계등록부, 아동가구통계등록부, 청년통계등록부 3종

< 통계등록부 구축 · 관리 체계 >

◆ 통계청 통계등록부 구축·관리 체계

▸ 기본 통계등록부 4종과 정책맞춤형 통계등록부 3종을 구축·관리(23.10월말 현재)



◆ 유엔(UN) 등록부 체계(등록기반 인구, 가구 센서스 핸드북, 3장 등록부와 데이터 소스 형태 중)

- (기본 등록부, base registers) 특정 시점에서의 모집단 특성 또는 다른 핵심 단위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보유한 등록부
- (특수 · 부가 등록부, specialised or supplementary registers) 관심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해 기본등록부에는 없는 특성 정보를 추가 구축한 등록부

□ 통계등록부 구축 현황('23.10월말 기준)

구 분		주 요 내 용	구축연도	주기/제공 시계열
기 본	인구통계등록부	○ 주민등록자료 등 행정자료와 인구총조사 등 통계자료를 융합한 등록센서스를 활용하여 인구·가구·주택 모집단의 특성 정보 수록·관리	2016	연간 (2015 ~ 2021)
	가구통계등록부	○ (인구)성별, 연령, 국적, 가구주관계 등 인구특성 기본정보(5,174만건) ○ (가구) 가구주 성별, 가구주 연령, 가구형태 등 가구특성 기본정보(2,202만건)		
	주택통계등록부	○ (주택) 주택의 종류, 건축년도, 면적 등 주택 특성 기본정보(1,991만건)		
	기업통계등록부	○ 사업자등록자료 등 행정자료와 경제총조사 등 통계자료를 이용해 전체 기업·사업체의 매월 개·폐업 현황 등을 반영한 모집단 자료 ○ 사업체명, 주소, 조직형태, 산업분류, 매출액, 종사자,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 정보 수록 - 기업체(1,063만건), 사업체(1,112만건)	2017	연간 (2010 ~ 2021) 분기 (2018.4분기~) 월간 (2022.1월~)
정 책 맞춤형	취업활동통계등록부	○ 사회보험 등 28종 행정자료와 인구·가구, 기업 통계등록부를 결합하여 '취업인구'에 대한 특성 정보 구축 ○ 취업활동에 관하여 인구특성 기본정보 및 장애여부, 종사상지위, 근무기간, 기업체 규모 등 수록 - 취업(5,174만건), 고용(6,514만건)	2022	연간 (2015 ~ 2021)
	아동가구통계등록부	○ 행정자료와 인구·가구통계등록부를 '아동(만18세미만)'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구축한 '아동 중심'의 모집단 자료 ○ 아동가구에 관하여 아동과 부모의 인구특성 기본정보, 양육유형, 동거인, 부모의 취업활동, 아동의 장애여부 및 다문화여부 등 수록(742만건)	2021	연간 (2015 ~ 2021)
	청년통계등록부	○ 청년(15~34세*) 인구를 대상으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특성을 수록한 모집단 자료 ○ 청년에 관하여 인구특성 기본정보 및 취업활동, 부모동거, 배우자유무, 자녀수 등 수록(1,253만건) * 청년기본법(19~34세), 청년고용촉진법(15~29세) 등 관련 법률의 청년 연령을 포괄	2022	연간 (2015 ~ 2021)

참고2

통계데이터센터(SDC) 및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(RDC) 현황

□ 16개소 설치현황(SDC·RDC통합 운영 12개소, RDC 4개소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경인권(통합5, RDC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회도서관(서울) • 종구센터(서울) • 상암센터(서울) • 강남센터(서울) • 국립암센터(고양) • 서강대학교(서울) • 서울대학교(서울) ◆ 충청권(통합2, RDC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계센터(대전) • 한국개발연구원(세종) • 국책연구단지(세종) ◆ 동남권(통합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산종합청사(부산) ◆ 동북권(통합1, RDC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SW융합테크비즈센터(대구) • 건강보험공단(원주) ◆ 호남권(통합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광주종합청사(광주) • 전북테크비즈센터(전주) • 제주연구원(제주)
--	---

- 통계법 제5조의2는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국가통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,
 - 「국가통계위원회 규정」, 「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」에서는 본회의와 더불어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토록 규정
 - 분과위원회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 보고,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,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

【 국통위 심의·의결 사항 및 국통위 운영】

❖ 법 제5조의2(국가통계위원회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

1.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유사·중복 통계의 조정,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4.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5.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
6.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
7.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❖ 국가통계위원회 규정(대통령령 제28211호) 제8조2(분과위원회)

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.

❖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(분과위원회의 기능)

4.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: 행정자료 활용전략, 데이터 허브 구축·활용, 자료의 표준화·연계 방안, 통계관련 시스템 구축, 자료제공, 보안 등에 관한 사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통계청 통계등록부과	
연 락 처	(042) 481 - 3831